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 ABC, ABC-RA, COA-RB, COB-RA, COC-RA, GCC-RA, IJA-RC, IRB-RA, JHC, JHC-RA, KGA-RA
 책임 부서: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 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ivision of Safety and Emergency Management; Chief of Staff

학교 방문자 School Visitors

I. 목적

학생 교습시간(student day)에 학교를 방문하는 방문자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II. 정의

*학생 교습시간(student day)*는 학생이 학교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교습 종료의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입니다.

III. 행정절차

A. 학생 교습시간 중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구 학교의 방문자는 방문자 관리 시스템(Visitor Management System-VMS)을 통하거나 지시받은 데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기록하고 학교관련 업무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착 후에는 안전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며 모든 방문자는 방문자임을 증명하는 이름표를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

1. 방문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2. 미국 주 정부나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예: 운전면허증)은 방문자 관리 시스템(VMS)으로 스캔되며, U.S. Department of Justice 의 50 개 주,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미국 영토 및 인디언자치구(National Sex Offender Public Registry of sex offender registries for 50 U.S.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U.S. Territories, and Indian¹ Country)의 성범죄자 등록부 통합 시스템인 국가 성범죄자 공개 레지스트리와 대조됩니다.

3. 방문자가 미국 주 또는 워싱턴 D.C.에서 발행한 사진 신분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직원이 해당 개인의 이름을 VMS 키오스크에 수동으로 입력한 다음, 미국 법무부 전국 성범죄자 등록 웹사이트를 검색합니다.

B. MCPS 계약자(contractors)은 학교 부지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반드시 신분증을 보이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MCPS 계약자(contractors)란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MCPS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에는 계약 주체의 직접 직원과 계약자가 MCPS 와의 계약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급업체 및/또는 독립 계약자가 포함됩니다.

1. 계약 부서(예: Division of Financial Management 또는 Division of District Operations)의 지침에 따라, 계약업체 직원에게는 MCPS 가 발행 신분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반드시 보이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2. MCPS 발행 신분증을 제공받지 못한 계약업체 직원은 학교 방문객 등록 장소에 방문하여 위의 A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문자 관리 시스템(VMS)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C. 학교장은 다음이 항상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모든 MCPS 학교는 방문자의 방문기록을 모니터할 담당자를 정해야 하며 방문기록과 방문자 패스 제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방문등록은 메인 사무실이나 학교 메인 문(main entrance) 입구 복도에 있어야 합니다.
2. 방문자 방문기록에는 방문자의 성과 이름, 도착한 시간과 방문하는 장소, 그리고 방문 후 나간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학교 방문자가 명시된 방문 목적에 따르지 않거나 정책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문 허가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매일 기재하는 방문기록의 사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¹ “인디언 자치구(Indian Country)”는 미국 법무부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4. 기준규격의 학교 환영 사인은 외부의 모든 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사인은 모든 방문자에게 주요 메인 문(main entrance)를 사용해야 하며 방문록에 기록을 하고 방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모든 외부 문은 잠겨 있어야 하며 메인 문(main entrance)과 학생이 임시건물로부터 또는 외부 활동에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지정된 입구만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C. 방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의 방문 및 회의:

a) 재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의 교실 방문 또는 회의를 위한 방문 절차가 각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b) 이와 같은 방문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됩니다.

학부모/후견인의 교실 방문 및/또는 회의는 사전에 약속조정을 해야 합니다.

d) 교실과 회의 방문은 방문 또는 회의가 교실에서의 학생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 장애가 있는 학생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법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팀 회의를 학부모/후견인이 음성 녹음하기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비디오 녹화는 이 금지가 주와 연방정부법에 따른 학부모/후견인의 권리를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후견인이 IEP 팀회의를 음성녹음할 경우, 학교 교직원도 회의를 녹음합니다.

(2) 가족의 교육과 사생활 권리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따라 학교에서의 녹음은 "교육적

녹음"으로 간주되며 *Student Records* 에 따라, 학생의 기록의 일부로 공개제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 (3) 음성 녹음은 주와 연방법 또는 학생의 교육서비스 공급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승인 없이 MCPS 나 학부모/후견인에 의해 공유되거나 공개될 수 없습니다.

2. 등록 예정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의 학교방문:

- a) 모든 학교는 등록 예정 학생 학부모/후견인에게 각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해야 합니다.
- b) 각 학교는 등록 예정 학생 학부모/후견인의 학교방문의 절차를 만들고 최소한 월 1 회 등록 예정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등록 예정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의 학교방문을 위한 절차는 각 학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d) 학교는 IEP 팀 회의 전, 학부모/후견인/보호자가 IEP 팀 회의가 고려할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요청에 최선을 다해 조정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학교장, 특수교육 리소스 교사/주임교사와/또는 특수교육 슈퍼바이저는 학부모/후견인과 방문을 조정해야 합니다.

3.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취학 나이 아동의 학교 방문:

- a) 각 학교는 재학생이 아닌 취학 나이 학생의 학교방문에 관한 승인 또는 무승인 여부의 프로토콜/특정 절차를 책정해 두어야 합니다.
- b) 학교의 프로토콜/특정 절차는 학생의 나이와 학교 학생 분포에 따른 가능한 모든 방해물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 d) 현 재학생이 아닌 취학 나이 학생의 학교방문은 교실에서의 학생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d) 대부분의 경우, 재학생이 아닌 취학 나이 아동의 학교 방문은 학교가 승인할 경우, 하루 동안입니다.

4. 다른 방문 또는 투어

모든 방문자가 좋은 방문경험이 되고 동시에 학교수업과 사무실 업무에의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문, 정보제공 모임, 수업참관, 외국 방문단의 학교 투어, 다른 지역사회 독립기관은 방문 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MCPS 는 실현가능할 경우, 요청을 조정하게 됩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방문, 참관, 투어를 원하는 개인 및 그룹은 superintendent of schools 의 chief of staff 에게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 a) chief of staff/대리인은 모든 방문 및 견학 요청을 관리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chief of staff 아래 (1)항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의 방문 및 견학 요청을 승인합니다. chief of staff는 교육감, 관련 부서 및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적절히 통지해야 합니다.

- (1) Division of School Leadership and Improvement(DSLI)의 지역 디렉터는 위 III.C.1, 2, 3 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현재 및 예비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그리고 해당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학령기 아동의 모든 학교 방문 및 견학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갖습니다. 학교장은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해당 DSLI 구역 교육장과 상의해야 합니다.

- (2) 학교 이외의 사업장 방문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해당 사업장의 적정 부서장(Director)에게 있습니다.

- b) 방문 전의 예약은 최소 3-4 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10 명 이상의 그룹은 최소 4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 c) 단체 방문/투어는 교습이나 행정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교육감의 chief of Staff가 지정한 특정 기간(예: 개학일, 공휴일, 평가시험 기간, 성적산출기간 말일 등)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D. 학부모/후견인이 학생의 수업시간중 학교에서의 개인교습을 고용할 경우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 *Montgomery County Code, §47-2, Hours and Places of Operation*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270-1, 1975년 5월 9일 (디렉터리 정보 갱신); 2000년 6월 20일 갱신; 이전 규정 COA-RA, 바뀐 규정 ABA-RB와 갱신 2008년 7월 1일; 갱신 2016년 6월 15일; 갱신 2017년 3월 6일, 2026년 12월 16일 갱신.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와 연방, 주, 지역 법에 있는 요건은 이 서류와 갱신판 사이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과 참조를 대체하게 됩니다. 갱신된 최신 정보는 다음 온라인판을 참조합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info/nondiscrimination.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학생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850 Hungerford Drive, Room 170,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udent Conduct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http://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